

대한민국 영토 독도 수호를 위한 서울시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 및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이행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2248번
-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외 39명
- 발 의 일 : 2024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24년 10월 18일

2.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함.

3. 제안이유

-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명백히 인정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외부 세력은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임.

- 그러나 최근 광화문역, 잠실역, 안국역 등 지하철 역사를 포함해 전쟁 기념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이유 없이 철거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송출되고 있었던 실시간 독도 영상 재생도 중단되는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독도 관련 콘텐츠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임.
-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와 관련된 기관들과 현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뒤늦게 변명하였지만, 해당 독도 관련 콘텐츠들이 철거되기 전후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는 등 일본의 눈치를 본 굴종 외교의 일부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차 변제안,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등 논란의 연장선에서 보았을 때 이번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 또한 굴욕·굴종 외교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의 영토라고 표현하고, 교과서 등을 통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이어가는 등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일련의 독도 관련 콘텐츠의 철거가 서울시 내에서도 다수 이루어지며 서울시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토주권 수호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우리 독도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에 따라,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의 추진과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6. 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음.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하여 ① 독도 지키기 캠페인 시행 등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를 통해 독도 수호에 대한 공감대 확산, ②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충실 이행과 서울시 관내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독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제공, ③ 독도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의 연례 개최와 독도의 날(10월 25일) 관련 행사 및 캠페인 기획으로 시민들의 참여 유도, ④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 독도 수호 및 영유권 강화를 위한 전국적 노력의 선도적 추진과 서울특별시 중심의 독도 관련 정책 및 교육에 대한 협력 방안 마련, ⑤ 독도 관련 연구와 국제 홍보 지원 및 독도 영유권 강화에 필요한 역사적·법적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 노력 등을 촉구하고 있음.

- 독도 관련 상위법령 중 독도교육에 관한 법령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 동 법률 제2조(국가 등의 기본책무)는 독도의 보전·관리를 위한 국가의 정책 개발 및 시행을 규정하고,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확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11호는 ‘독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1」(국무총리훈령) 제2조제3호에서

1) 국무총리훈령으로 제1조(목적)에서 우리나라의 독도 영토관리와 환경보전 관련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각 부처의 관련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에서의 독도 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협의·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독도 관련 법령 등〉

상위법령 등	제정일	소관부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1997.12.13.	환경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및 시행령	2005. 7.29.	국가보훈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13.12.30.	해양수산부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2014. 4. 2.	해양수산부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 규정	2017.10.25.	국무조정실

- 독도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32개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독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번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강원특별자치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9.24.	
2	경기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5.19.	
3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8. 7.	
4	경상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11. 5.	
5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06.11. 2.	
6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2017.10.19.	
7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2005. 7. 4.	
8	경상북도 독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09. 3. 9.	
9	광주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11.15.	
10	대구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10.30.	
11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17. 7. 7.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정부합동독도영토관리대책단을 둔다고 밝히고 있음.

12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3.12.20.	
13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4. 7. 5.	
14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19.	
15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3.26.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12.18.	
17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	2024. 4.12.	
18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2006. 1.16.	
19	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2001.12.13.	
20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5.10.30.	
21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	2024. 5.24.	
22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	2010.10. 1.	
23	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2012.10.15.	
24	울릉도·독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3. 8. 6.	
25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9.17.	
26	울산광역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	2020. 9.24.	
27	인천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 7.13.	
28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1. 4. 8.	
29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2021. 7.29.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2023.12.22.	
31	충청남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 5.	
32	충청북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2020.12.31.	

※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 가장 많은 독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로써 서울특별시교육청(2020.3.26.제정)과 서울특별시(2020.5.19.제정)가 조례를 제정함.

- 「경상북도 독도의 달 조례」,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는 각각 독도의 달(10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규정하고 있고, 독도 관련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장의 시책 마련 및 적극 추진 노력(제2조), 독도교육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제3조), 실태조사(제4조),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제5조제6조), 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는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감의 장기적·체계적인 시책 수립 노력(제2조),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제3조), 실태조사(제4조), 사업추진(제5조), 독도교육주간(제6조), 협력체계 구축(제7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 독도교육을 실시²⁾하고 있으며,
 - 2024년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중부권캠퍼스)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대상 독도교육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 서울시 차원의 독도 관련 행사 또는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특별시 독도 교육 현황 >

연도	강의명	교육내용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대상	참여인원(명)
2024	우리가 사랑한 독도 이야기: 지리와 역사	독도의 지리와 역사, 독도 분쟁의 이슈와 전망	서울 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7.24 ~ 7.31	서울시민 누구나	35
	독도를 찾아서 : 왜 독도를 지키는 가	독도 분쟁의 역사, 독도의 가치와 환경	서울 시민대학 중부권캠퍼스	9.12 ~ 10.17	서울시민 누구나	25 (진행중)
2023	도심 속 박물관과 서울의 문화유산 탐구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현대의 문화 흐름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감상하는 강좌 (독도체험관 포함)	서울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8.23.	서울시민 누구나	18

2) 평생교육과-25557(2022.9.7.)호 「업무이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독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고유사업)으로 이관함.

	서울의 박물관들 : 박물관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박물관의 역사와 변화를 함께 알아보는 강좌 (독도체험관 포함)	서울 시민대학 본부 캠퍼스	9.13. ~ 10.11	서울시민 누구나	30
2022	독도사랑 인증샷 이벤트	서울시민 일상에서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 의식을 일깨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진행		6월 ~7월	서울시 초·중·고 학생, 교사 및 학부모 등	이벤트 응모 57명, SNS 게시 1,445건

출처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 본 결의안은 최근 일련의 독도 관련 이슈(일본 영유권 주장, 독도 관련 콘텐츠 철거 등)가 불거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독도의 역사적·문화적 관심도 및 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 차원의 독도 지키기 캠페인과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서울시 차원의 독도 관련 교육, 행사 및 프로그램이 부족해 보이는바, 독도 관련 행사, 프로그램 강화와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극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평생교육국 검토의견 (평생교육과-11237, 2024.10.29.)

- 동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 : 결의안 수용
 - 독도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인식하고 독도교육에 대한 지원 지속 추진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한 독도 교육 확대 등 결의안 의견 적극 이행
 - ▶ 2025년부터 서울시민대학 내 독도 강의 추가 개설 등 교육확대
 - ▶ 독도교육 관련 토론회 및 실태조사 등 추진
 - ▶ 서울시교육청 차원 독도주간 캠페인 등 행사 추진 시 서울시 적극 협조 예정

교육정책국(중등교육과) 검토의견 (대외협력담당관-12492, 2024.12.11.)

○ 동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 : 결의안 수용

- 서울시교육청은 본 의원발의 결의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특별시의 독도 교육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음. 또한,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서울시 내 모든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도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할 계획임

- ▶ 제23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에 독도교육 포함
- ▶ 학교별 독도교육 계획 수립 및 독도교육 실시
- ▶ 독도교육주간 운영, 교원의 독도교육 역량 강화 지원
-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활용 지원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현종
------	-----	-------	-----

별첨.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도에 대한 관심 및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도교육 사업의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독도교육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3. 독도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지원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시민의 독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3.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4. 독도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독도교육 사업

제6조(재정지원)

- ①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서울특별시교육청, 타 지방자치단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시장은 독도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분명하게 기록하는 등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연간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재원조달 방안
 3.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프로그램 개발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
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
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
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서울특별시,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